

부산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0나639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피고, 피항소인 1. 의료법인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이

담당변호사 김은정, 최청희, 구자흔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29.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32559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의료법인 B은 18,242,470원, 피고 C은 6,151,252원, 피고 D은 6,036,2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5면 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검사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정한 비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는바 일응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들이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요건인데 반하여,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들과 피고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두 채권은 발생 원인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보험자들 개개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은 각각 약 19만 원에서 약

6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위 금액에 비추어 채무자인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또는 그들에 대한

집행곤란의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다수의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그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고 권리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대위권이 원고의 소제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반환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에 대한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의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